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 회)	

책임운영기관의 설치·운영에
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윤호중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책임운영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통일부 조직 개편 결과를 반영하여, 통일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통일교육원의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, 총 정원의 한도를 상향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통일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통일교육원의 기관 명칭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변경
- 나. 국정과제 교육과정 기획·관리에 필요한 인력 2명(5급1, 6급1)을 증원하기 위해 국립통일교육원의 총 정원 한도 상향(84명→86명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, 통일부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책임운영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책임운영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 교육훈련형 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“국립통일교육원”을 “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”으로 한다.

별표 1의2의 국립통일교육원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의 국립국제교육원란 아래에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	통일부	「통일교육 지원법」에 따른 대국민 통일교육과 각급 학교 및 공공·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에 대한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	86명
-------------	-----	---	-----

별표 2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“국립통일교육원”을 “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”으로 한다.

별표 3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“국립통일교육원”을 “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”으로 한다.

별표 3의2의 일반회계란 제2호 중 “국립통일교육원”을 “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508